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제정 2006. 11. 01

개정 2010. 11. 01

개정 2014. 04. 01

개정 2015. 04. 01

개정 2017. 01. 01

개정 2018. 02. 01

개정 2019. 02. 01

I.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 행위의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1. 기본 원칙

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 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선

임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의 구성 :

- “건설사업본부장”은 내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심의위원은 하도급 업무 관련 유관팀장들로 구성한다.
- 자율준수 프로그램 (CP)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심의 기구 등이 상기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CP가 내부 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 (1)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2) 내부 심의위원회는 개별 하도급거래 계약 (예상)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회사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 (5) 필요시 관련 협력회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6)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 (예시. 인사 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 (7)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 중

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